

#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 (안)

## 심사보고서

내부위원회  
1995. 2. 23.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5년 2월 14일

. 회부일자 : 1995년 2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11 회 임시회

. 제 1 차 내부위원회 (1995. 2. 23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최 경 주 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
  - 개정 법령과 관련된 조례의 조문 정리와
  -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표준세율은 확정코자 하는 것임.

※ 지방세법 개정(법률 제4,794호. '94.12.22)

지방세법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4,481호. '94.12.31)

#### 나. 주요골지

##### ○ 조문 정리 내용

-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 변경 용
- 취득세 과세대상에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추가
- 등록세의 신고납부 규정 신설

##### ○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중 지하수 세율 조정

( 현 행 )

( 개 정 )

- 지하수 : 톤당 15원

- 음용수 : 톤당 100원

- 온천수 : 톤당 50원

- 기타용수 : 톤당 10원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 전문위원 우 병 수 )

충청북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이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

현행 조례 조문상의 법 적용 규정 조항등의 조문정리와 자구를 삽입하여

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이며,

주요내용으로는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자가 그에따른 세액을 산출

하여 자진납부토록 하던것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제20조의 아래

항목 중 중기 분야를 건설기계로 함과 아울러

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국한하여 적용되던 취득신고 및  
자진신고 납부등에 있어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추가하여 시행할 수  
있도록 하였으며

또한 등록세의 신고납부 규정의 신설과 지역개발세과세대상 중 지하수의  
세율에 있어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15원으로 하던  
세율을 확대조정 인상하여

그 표준세율을 음용수에 있어서는 톤당 100원으로, 온천수는 50원, 기타  
용수는 10원으로 각각 확정시행코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관련조례의 조문정리와 표준세율의 확정을 위해 개정코  
자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7인, 찬성 7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· 충청북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· 신규조문 대비표